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269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박춘선, 강석주,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현재,  
김혜영, 남궁역, 신복자,  
심미경, 오금란, 유정희,  
이상욱, 이성배,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30명)

## 1. 제안이유

- 본 조례 제18조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시행(2025.9.29.)된 바, 현행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 조항 삭제(안 제1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8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u></p> <p><u>사업)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u></p> <p><u>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u></p> <p><u>따른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u></p> <p><u>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체</u></p> <p><u>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u></p> <p><u>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p><u>1. 외래생물 분포 및 현황 조사</u></p> <p><u>2.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u></p> <p><u>우려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u></p> <p><u>등의 퇴치、방제</u></p> <p><u>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u></p> <p><u>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u></p> <p><u>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u></p>	<p><u>〈삭 제〉</u></p>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이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시행 (2025. 9. 29.)된 바, 현행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현  
추계분석관 이설희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